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2016.10.07. 국세청 국정감사**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5년전 국정감사 질의 중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2016. 9. 17.-2)

1. 국제청 자료요구 5차  
2. 2010 ~ 현재까지, '대형로펌과 관계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민사소송 등 현황

○ 대형로펌과 관계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민사소송 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신하여 연도별 현황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단위 : 건, 억원, %)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807	2,097	876	2,354	208	687	23.7	29.2
2012	818	3,023	788	2,425	176	192	22.3	7.9
2013	746	3,880	757	4,547	171	380	22.6	8.4
2014	724	3,980	703	2,475	153	115	21.8	4.6
2015	551	1,341	597	2,680	134	134	22.4	5.0
2016.6월	293	505	299	526	69	82	23.1	15.6

대형로펌과 관계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민사소송 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1년도국감-기획재정(2011년9월26일)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공정사회와 연관된 국 그런 불공정 세무행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지금 이미 진출해 있는 분들과 연관된 대형로펌이 세무소송이나 심판청구 혹은 이의신청에 관계되었을 경우 인용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관리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식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관리하세요. 기록에 지금 이미 진출해 있는 분들과 연관된 대형 로펌이 세무소송이나 심판청구 혹은 이의신청에 관계되었을 경우 인용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관리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 이원종 물론 부당하거나 부패할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인용률만 높으면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표관리를 해야 한다고...] 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 국세청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10-16년)

[건]

구분	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계	78	4	7	11	18	18	10	10
취업가능	74	4	7	9	18	17	9	10
취업제한	4			2		1	1	

※ 출처: 국세청 제출

취업가능 95%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승인심사 절차

국세청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국세청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성년등록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제한기간 및 직위 등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직위
--------	--------

3. 검토 사항

1. 취업제한사유(국가직위취득) 여부

2. 취업제한기간 적용 여부

3.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업무기간	직위	직급 등	취업제한사유	취업일부	비고

4.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다.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4. 종합 의견

5. 검토의견

1. 교육, 직위, 직급, 업무종류, 경력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결정  
 2.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3.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4.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5.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6.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7.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8.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9.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10.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국세청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성년등록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제한기간 및 직위 등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직위
--------	--------

3.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업무기간	직위	직급 등	취업제한사유	취업일부	비고

4.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다.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업무기간	직위	직급 등	취업제한사유	취업일부	비고

4. 종합 의견

5. 검토의견

1. 교육, 직위, 직급, 업무종류, 경력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제1항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결정  
 2.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3.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4.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5.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6.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7.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8.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9.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10. 회직 전 60일 소액제한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종류(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소제외종류 제외) 여부 확인

밀접한 관련성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①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취업승인&불승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관련성 판단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의견서**

I.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직급 등 : 4급 (※ 퇴직)

II.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사기업체명명칭 : (소재지 : )	취업예정직위 :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 자본금 억원, 외형 억원	취업예정일 :
주요 사업내용	담당예정업무

III. 검토

- 1. 취업제한 여부  
- 재산
- 2. 취업제한 여부  
- 취업제한 사유  
(2014. 12. 31. 현재)

3.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 등

근무기간	직위	직급	부서명	주요업무	비고
2007. ~2008.				- 관내 법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사계획 수립 및 종합분석, 조사업무	
2008. ~2009.				- 세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한 국세의 조사·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총괄	
2009. ~2010.				- 관내 법인 및 개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득세 등 조사업무	
2010. ~2010.				- 관내 법인 및 개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득세 등 조사계획 수립 및 종합분석	
2010. ~2010.				- 세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한 국세의 조사·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총괄	
2010. ~2012				- 관내 법인 및 개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득세	

당해 부서는 관내 법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사계획수립 및 종합분석,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바, 당해 부서에 근무하였던 기간 중 당해 부서에서는 취업예정업체에 대한 조사이력이 없어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 없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인사혁신처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범위) 의견

이의신청, 행정소송 불복 현황

[건,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6
이의 신청	청구	건수	5,193	4,649	4,803	3,713	1,794
		금액	14,867	13,479	10,639	12,637	4,709
	12년 5,193건/1조4,867억 → 15년 3,713건/1조2,637억 (▼)						
	인용	건수	1,209	1,130	1,163	1,022	480
금액		985	1,193	966	739	547	
행정 소송	제기	건수	1,679	1,881	1,957	2,026	784
		금액	29,872	27,688	55,676	34,123	10,064
	12년 1,679건/2조9,872억 → 15년 2,026건/3조4,123억 (▲)						
	패소	건수	179	208	204	237	104
금액		7,415	7,179	3,577	6,266	2,529	

\*자료: 국세청 제출

12년-현재까지 연도별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 현황

[억 원]

구분	합계	과오납환급					세법에 의한 환급			
		계	불복	직권 경정	경정 청구	착오이 종납부	계	공제 초과	부가세법 제59조	감면. 기타
12	603,351	28,158	10,508	2,036	12,010	3,604	575,193	61,687	494,864	18,642
13	632,559	30,336	11,715	1,434	13,948	3,239	602,223	67,540	516,568	18,115
14	613,488	30,436	13,751	2,584	11,014	3,087	583,052	68,254	493,552	21,246
15	654,351	62,590	24,989	6,451	28,196	2,954	591,761	65,530	500,077	26,154

불복환급금 12년 1조508억 → 15년 2조4,989억 (꾸준히 ▲)

12년 대비 3년 사이에 불복환급금 2.4배 증가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처리 현황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합계	1,524	179	11.7	1,545	208	13.5	1,524	204	13.4	2,036	237	11.6
1억 미만	735	55	7.5	694	54	7.8	669	58	8.7	971	64	6.6
1억~10억 미만	595	73	12.3	667	96	14.4	621	88	14.2	807	94	11.6
10~30억 미만	108	30	27.8	97	23	23.7	135	31	23.0	144	33	22.9
30~50억 미만	34	5	14.7	30	9	30.0	44	12	27.3	48	20	41.7
50억 이상	52	16	30.8	57	26	45.6	55	15	27.3	66	26	39.4
10억 이상 평균			24.4			33.1			25.9			34.7

출처: 국세청 제출

10억 이상 고액소송 구간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증가 추세

전체 패소율의 약 2-3배에 달함

# 청구세액별 불복심판청구 현황 (내국세 기준)

출처: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 2-3-1. 내국세 현황 National Taxes

■ 2015년

(단위: 건, %) (Unit: case, %)

청구 세액별 by Size of Tax Amount Requested	처리대상건수(①) Number of Cases to be Settled			처리건수(②) Number of Cases Settled					처리율 (2/①) Ratio of Cases Settled	인용률 Acceptance ratio		이월 건수 Number of Cases Carried Forward	
	소계 Subtotal	전년 이월 Carried Over	당년 접수 Requested	소계 Subtotal	취하 (③) With- drawn	각하 (④) Rejected	기각 (⑤) De- mised	재조사 (⑥) Re- investi- gated		인용 (⑦) Accepted	㉑		㉒
합계 Total	7,490	1,601	5,889	5,999	89	363	4,012	557	978	80.1	26.0	18.3	1,491
3천만원 미만 less than 30 million won	2,498	275	2,223	2,210	26	178	1,773	57	176	88.5	10.7	8.3	288
3천만원~1억원 30 million won~less than 100 million won	1,380	200	1,180	1,147	17	66	753	97	214	83.1	27.5	20.7	233
1~5억원 100 million won~less than 500 million won	1,928	456	1,472	1,522	16	63	866	295	282	78.9	38.3	23.3	406
5~10억원 500 million won~less than 1 billion won	492	164	328	364	7	25	198	39	95	74.0	37.5	29.9	128
10~50억원 1 billion won~less than 5 billion won	815	308	507	541	15	27	306	55	138	66.4	36.7	29.3	274
50~100억원 5 billion won~less than 10 billion won	185	83	102	115	2	3	71	7	32	62.2	34.5	30.2	70
100~200억원 10 billion won~less than 20 billion won	88	49	39	56	4	-	32	2	18	63.6	38.5	36.0	32
200~500억원 20 billion won~less than 50 billion won	66	41	25	34	2	-	11	4	17	51.5	65.6	60.7	32
500~1,000억원 50 billion won~less than 100 billion won	23	15	8	8	-	-	2	1	5	34.8	75.0	71.4	15
1,000억원 ~5,000억원 100 billion won~less than 500 billion won	15	10	5	2	-	-	-	-	-	-	-	-	-
5,000억원 이상 500 billion won or more	-	-	-	-	-	-	-	-	-	-	-	-	-

10억원 이상 청구 인용률 50%

200억~500억 청구 인용률 65.6%

500억~1천억 청구 인용률 75.0%

1천억~5천억 청구 인용률 50%

고액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인용률 상당히 높음

# 고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 - 국세청 제출자료

□ 국세환급금에 대한 건  
5. 국세 유형별 불복환수 증가 또는 감소한 이유  
- 구체적인 분석결과 제출 요망

□ 불복에 따른 환급액 증가는

- 납세자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 확대로 과세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복청구가 증가했고,
- '15년에는 장기 계류 중인 '12년 이전 고지분과 경정청구 등 일부 고액사건(00은행' 등) 확정에 따른 우발적 요인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 '07.7월, 대법원, 패소확정 : '15.1월, 환급액 : 3,269억원

※ 고액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

- 특히, 최근 법원이 과세요건이나 절차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해석을, 비과세요건을 이루는 과세이연 규정 등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 소송대응과 과세처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청은 과세처분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 고액·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역량있는 조세전문변호사 선임을 확대하고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패소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작성자      법무과 

※ 고액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전체 VS 대형로펌( 12- 16.6월)

(단위: 건,%)

	11			12			13		
구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52	19	36.5	52	16	30.8	57	26	45.6
대형로펌	36	14	38.9	38	14	36.8	47	24	51.1
대비(%)	69.2	73.7	+2.4p	73	87.5	+6p	82.4	92.3	+5.5p
	14			15			16.6		
구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55	15	27.3	66	26	39.4	56	14	25.0
대형로펌	41	12	29.3	51	23	45.1	45	14	31.1
대비(%)	74.5	80	+2p	77.2	88.5	+5.7p	80.6	100	+6.1p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범무원인

\*\* 11년 ~ 16.6월 종결사건 기준

**대형로펌이 원고대리인인 사건은 전체 대비 평균 76.2%**

**(국세청) 패소사건 중에서 대형로펌이 상대방인 경우는 90%에 육박(87%)**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6대 대형로펌 (11-16.6월)

(단위: 건,%)

원고대리인	A	B	C	D	E	F
처리	91	73	23	19	11	46
국패	26	27	9	6	2	7
패소율	28.6	37.0	39.1	31.6	18.2	15.2

-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범무법인
- \*\* 11년 ~ 16.6월 종결사건 기준
- \*\*\* 이례적으로 원고측에서 로펌을 두 개이상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 중복 체크됨

50억 이상 고액소송 338건(처리 기준) 중 263건,

77.8%가 6대 대형로펌에 집중!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전체 VS 대형로펌( 12- 16.6월)

성명	퇴직 연도	퇴직 당시	재취업 연도	중간취업	취업가능	로펌 취업	현재 취업	
김00	2012	부산지방국세청장	2013	00세무법인	세무사자격증	2015	김앤장	
박00	2013	국세청 차장	2013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5	김앤장	
최00	2013	국세청 감사관실	2014	00세무사사무소	非취업제한	2016	김앤장	
이00	2014	국세청 차장	2014	00세무법인	세무사자격증	2016	태평양	
송00	2013	서울지방국세청장	2013	00세무법인	非취업제한	2016	태평양	
한00	2013	서울지방국세청	2014	00세무본부	非취업제한	2016	울촌	
장00	2012	속초세무서장	2013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4	광장	
이00	2013	중부지방국세청	2014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광장	
이00	2014	서울지방국세청	2014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광장	
배00	2014	서울지방국세청	2014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과자	
하00	2012	<b>5대 로펌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중 중간취업자 일부 발취</b>						
임00	2012	국세청 감사관실	2012	00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세종	
이00	2013	중부지방국세청		<b>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만 찾아낸 결과!</b>				

※ 공직자윤리법 제10조①, 제17조③에 따른 공개대상사만 추출

2014, 2015년 국감 시정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년	1. 조세불복사건 패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송무조직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송무인력을 대폭 확충</li> <li>◦ 신설된 서울청 송무국장 직위에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li> </ul>
`15년	9. 조세불복사건 패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에서는 패소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송업무는 ‘제2의 세무조사’라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송무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해 변화된 송무 환경에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팀제를 도입</li> <li>◦ 변호사 채용 확대 등 소송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li> </ul> <input type="checkbox"/> 또한, 고액·중요 소송은 1심부터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

국세청, 2018년까지 변호사 66명 → 100명 증원 계획

금융감독원 <2013~2015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파인」(fine.fss.or.kr)으로 검색

“금융은 든든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 9. 9(금) 석간 배포 2016. 9.

담당부서 회계실사국 정용원 국 장(3145-7700), 고영길 팀 장(3145-7734)

제목: 2015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I 회계법인 일반 현황

1 회계법인 현황

15년 회계감사 8.6%, 세무 13.7%, 경영자문 8.1%

14년 회계감사 4.5%, 세무 5.8%, 컨설팅 4.0%

13년 회계감사 △0.5%, 세무 2.8%, 컨설팅 △3.1%

15년에는 세무분야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컨설팅을 앞서며 2위 차지

[표3]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4대 회계법인 점유율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13		FY2014		FY2015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1,425	100.0	22,417	100.0	24,670	100.0	2,253	10.1
감사 (점유율)	4,417 (20.6)	37.6	4,456 (20.6)	37.3	4,671 (24.8)	37.0	215 (2.0)	4.8 (H)
세무	2,816 (13.1)	13.1	3,731 (16.6)	16.6	3,957 (16.0)	16.0	226 (2.4)	7.0 (H)
경영자문	1,137 (5.3)	5.3	1,133 (5.1)	5.1	1,237 (5.0)	5.0	104 (0.9)	9.2 (H)
컨설팅	1,027 (4.8)	4.8	1,133 (5.1)	5.1	1,237 (5.0)	5.0	104 (0.9)	9.2 (H)

[표1] 회계법인 현황

구분	'14.3월	'15.3월	증감	증감률
소속	9	9	0	0.0
등록	29	34	5	17.2
회계사	96	99	3	3.1
전체	134	141	7	5.2

전체 회계법인은 157개. 4대 법인은 전체 중 2.5%에 불과

4대 법인의 '세무' 매출액, 전체 대비 약 40%, 증가세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2016.10.07. 국세청 국정감사**

## 20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구 분	'15년	'14년	'13년
중앙행정기관	17/18	17/17	12/14

617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은 5등급 중 4등급!

기관정원 2천명이상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18개 중 17위!

상세결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 바닥, 자기신뢰 최고”

- 종합청렴도: 14년 6.71점(17/17)→ 15년 6.94점(17/18)
- 외부청렴도: 14년 6.78점(16/17)→ 15년 6.93점(17/18)
- 내부청렴도: 14년 8.41점( 1/17)→ 15년 **8.47점(1/18)**
- 정책고객평가: 14년 6.02점(17/17)→ 15년 6.70점(9/18)

# 2016.7.1. 업무보고 요청

48 제846회-기획재정부4차(2016년7월1일)

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왔으면 되었지, 잘못된 방향으로, 틀렸던 방향으로 개입하는 일은 차단이 되도록 청장님하고 견하고 내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관님에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오를 이 자리에서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이해관계 직무회피가 필요한—즉 퇴직공무원 등 말이지요—다른 부서들의 윤리강령이 어떤지 꼭 한번 보세요. 보셔서 현재 국제청 공무원행동강령이 거기에 얼마나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국제청 행동강령에 없는 것 있잖아요? 심지어는 외국 국제청도 한번 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조항들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마찬가지로 7월 말까지입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립시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조달청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토목용 보강재 문제가 몇 년 동안 고가 계약했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다

에는 부정당제재까지 아직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 중간에는 견회들이 부당 이득을 관수하고 관계기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격 자체를 잘 보고요 공문을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모든 현장에서 다 통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식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자주 법적으로 폭정판결이 난 경우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본 의원실이 자료도 보셨습니까만 검찰이 특별히 고발조치한 5개사가 있었어요, 부정행위 및 계약조건 위반 혐의로. 제가 특별히 이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 에스엠평 회사가 있었어요. 검찰에 고발된 회사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버젓이 그 회사가 입찰리스트에 올라가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견회들이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소평들은 이용을 못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회들이 그 정보를 모든 관련

746회-기획재정부4차(2016년7월1일) 45

경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보고서 하나, 이 리포트들 7월 말까지,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상반기를 정리하신 다음에 7월 말까지 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청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 업무의 청정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제청장 임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 잘못된 집안 식구끼리 뭐가 잘못된다든 인식의 국민들 사이에 번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물론 청 시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감사원이 15년 3월에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발표했지요?

○국제청장 임환수 예.

○김성식 위원 그때 1억 원이 넘는 법인세 탈루 도는 74명의 세무대리인 중 38명에 대해서 경제요구를 하지 않았다. 시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기 제시니까

○김성식 위원 국제청 공무원행동강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과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서 국제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 관계자 직무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게 있습니까?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직무회피자의.....

○김성식 위원 이해 관계자의 직무회피.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최근에.....

○국제청장 임환수 2016년 2월 1일 자료 개편.....

○김성식 위원 개편했지 않습니까?

왜 감사관님이 모르고 계세요?

○국제청장 임환수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 제출.....

○김성식 위원 개편했지요?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김성식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그 개편 내용이 국제청 이해 관계자들이 세무에 불공정하게 관계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나 충분히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견회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편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런 유사한 일도 계속 지적을 많이 받는 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사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련된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한번 살펴본 게 있으십니까?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또한 서면으로 자료

경도밖에 안 봤기 때문에.....

## 다른 부서들의 윤리강령이 어떤지 꼭 한번 보세요.

에 '어려져서 업무들은 그동안 너무 고가로 해서 바가지들 씌웠으니까 계약 시 유의하십시오.' 지금 빈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 다른 데는 있는데 국제청 행동강령에 없는 것, 심지어는 외국 국제청도

보도 없이 잘못된 계약을 해서 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조달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 조항들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국제청감사관 이은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6.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에 한정

## 다른 부처의 행동강령 등

### 1.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특정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사유 등을 사전에 소속 과장에게 보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접촉 후 결과를 즉시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 [사적접촉제한]

직원은 **검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관 등에 대한 검사의 실시계획 확정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기관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해서는 안 된다.**

### 3. [선물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거래상대기관과 외부에서 **식사 또는 면담**을 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필요할 시 준법감시인은 신고된 식사나 면담을 제한할 수도 있음)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2016.10.06. 국세청 국정감사**

##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예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업종별 신고인원

(단위: 명)

귀속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69,556	65,275	67,937	132,602

###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세액공제	귀 속	2011	2012	2013	2014
성실신고 확인비용	인 원	58,247	56,876	57,516	114,842
	금 액	50,090	49,033	49,617	101,223

최소, 15년 기준 약 1,687억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 지출!  
[1인당 약 127만원]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추이

(단위: 개)

2008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829	4,828	4,721	5,105	5,806	4,932	5,097

※ 출처: 국세청 제출

※ 폐업사유를 기재하면서 '법인전환' 이라고 기재하면서 집계된 것

##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법인세 안내장

MyNTS

업종별 분야별 법인세 참고사항 [3월초 서비스 예정]

-(신용카드 관련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4년 귀사의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1.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액: 12백만원
2. 업무무관업소 이용액: 34백만원
3. 개인적 치료 비용: 55백만원
4. 공휴일 사용액: 78백만원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R&D비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선업기

1. 취소일: 2014년 1월2일
2. 취소사유: 22테스트원소세유)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비율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귀사가 2014년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등 금

1. 수량액: 789백만원

-(고용이 감소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일반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고용상충부자책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감소한 인당 1만명이 초과됩니다. 귀사의 2014.11월까지 종업원수와 2013.11월까지 종업

1. 고용감소인원: 89명

-(수도권에 투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수도권개발지역내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상충부자책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귀사의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액: 12백만원
2. 업무무관업소 이용액: 34백만원
3. 개인적 치료비용 55백만원
4. 공휴일 사용액: 78백만원

귀사의 연구전담부서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일: 2014년 1월2일
2. 취소사유: 23

귀사의 고용이 감소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감소인원: 89명

#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종합소득세 안내장(15년 귀속)

**적격증빙 과소수취 해당여부**  
**: 전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수취한 내용과 실제비용으로 신고한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자료 존재: 전년도 귀속 소득세 과세자료 또는 부가세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자료 등) 있는 경우**

**재고자산 과다과소: 13년 귀속신고내용의 손익계산서 기말재고와 14년 귀속 신고 내용의 손익계산서 기초재고와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 이상**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페이지(2페이지)에 사전 안내하여 드리오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 성실하게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신고 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재무제표 지정, 내부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국세행정시스템(NTEBS)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총 12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출 여부**  
 올해(2015년)에

**항목 설명**  
 사전안내

**비고**  
 전년도(2014년)

**금년도에는 신고 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또는 관세사서로 하십시오.

\* 14년 내용은 1월말까지 수렴한 자료로 적정하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5 실적	'16 예산	8월 누계 세수실적			세수진도비	
			'15	'16 [잠정]	증감액	'15 (%)	'16 (%)
총 계	208.2	223.3	145.3	166.2	21.0	69.8	74.5
소득세	62.4	65.1	41.7	47.6	6.0	66.7	73.1
근로장려 금	△1.1	△1.1	-	△0.6	△0.6	-	52.8
자녀장려 금	△0.7	△0.7	-	△0.3	△0.3	-	45.1
법인세	45.0	51.4	32.6	39.7	7.1	72.4	77.3
상속·증여 세	5.0	5.2	3.3	3.3	-	65.4	64.0
부가가치 세	54.2	59.8	38.0	44.9	6.9	70.2	75.2
기 타	43.4	43.6	29.7	31.5	1.8	68.7	72.4